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61044

ROOSTPI ACF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6. 10. 1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4. 11.04

http://www. makeabetter.co.kr/

## [루스트플레이스] 정 보 공 개 서

㈜메이크어베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주)메이크어베러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 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9. 1층(노형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64-747-255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64-747-2555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루스트플레이스 외 1개	제주특별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9, 1층(노형동)						
㈜메이크어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베러	2017.07.17	2017.07.25	부성훈	064-747-2555		/			
	법인등록번호	220111-0164954	사업자등록번호		782-86-00713				

TITO O TITO O THE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11.0.01		루스트플레이스	제주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9, 1층(노형동)				
	사용인 부성훈 (임원)	기 글레이_ [ 의 1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부성훈	064-747-2555	없음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AI SOI		루스트플레이스 - 강형석 외 1개 -	제주도 제	주시 한라대학로 39	), 1층(노형동)		
사용인 (임원)	강형석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부성훈	064-747-2555	없음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루스트플레이스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루스트플레이스	_
상 호	루스트플레이스 OO점	_
상표(서비스표)	루스트플레이스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1-0329778-0000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010,051	3,799,001	211,049	14,510,657	48,725	145,100
2022년	4,687,540	3,823,044	864,495	13,943,007	660,441	653,446
2023년	5,613,659	4,206,477	1,407,181	13,922,942	583,841	542,686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3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원인어구	이 <del>트</del>	기간	직위	담당 업무			
		2017.07.25 <sup>~</sup> 현재	㈜메이크어베러	회사 업무 총괄			
		2017.07.25 원제	(Make a better) 대표이사	최시 ㅂㅜ ㅎㄹ			
가맹사업	부성훈	2014.04~2020.12	루스트플레이스 제원점 대표	업무총괄			
관련 임원	<b>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b>	2021.04~현재	루스트익스프레스 대표	업무총괄			
		2016.08~현재	에이바우트 한라대점 대표	업무총괄			
		2018.07~현재	㈜바블 대표이사	업무총괄			

		2021.02~현재	루스트익스프레스루스트플레 이스팍차이나 대표	업무총괄
		2022.09~현재	㈜에이바우트스타디움 대표이사	업무총괄
	강형석	2017.07.25 <sup>~</sup> 현재	㈜메이크어베러(Make a better) 이사	가맹점관리
		2016.01~현재	루스트플레이스 시청점 대표	업무총괄
		2020.10~현재	루스트플레이스 숭의점 대표	업무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심	상근	비상근	역원구(8)	
2023년 12월 31일	2	_	18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THO 67 FI 4 C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메이크어베러 (Make a better)	가맹사업 경영	2017.07.25. <sup>~</sup> 현재	에이바우트커피(20170520)라 는 영업표지의 커피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루스트플레이스	가맹점영 업 목적사용	2014.09.19. 출원 2015.08.19. 등록	출원 제41-2014-0037852 등록 제41-0329778-0000	부연주	2025.08.19. (2025.08.19)
ROOSTPLACE	가맹점영 업 목적사용	2014.09.19. 출원 2015.08.19. 등록	출원 제41-2014-0037853 등록 제41-0329779-0000	부연주	2025.08.19. (2025.08.19)
Roost	가맹점영 업 목적사용	2014.09.19. 출원 2015.08.19. 등록	출원 제41-2014-0037854 등록 제41-0329780-0000	부연주	2025.08.19. (2025.08.19)

- \*당사는 서비스표에 관한 서류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귀하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 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п. 가맹본부의 루스트플레이스 가맹사업 현황

#### 1. 루스트플레이스를 시작한 날: 2013년 4월 22일

※ 당사는 2017년 7월 가맹사업을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은 이전 개인사업자의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 2. 루스트플레이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루스트	루스트플레이스	부연주	2013.04.22. ~ 2017.07.24	제주도 제주시 수덕로 79 (노형동, 2층)
㈜메이크어베러 (Make a better)	루스트플레이스	부성훈	2017.07.25 <sup>~</sup> 현재	제주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9, 1층(노형동)

#### 3. 루스트플레이스 업종

## TITOOMINATE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영업표지	업	종
2 4 5 5 71 01 4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루스트플레이스	서양식	파스타, 피자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루스트플레이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2021.12.31.		2022.12.31.			2023.12.31.		
^  <del>-</del>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8	17	1	19	17	2	18	16	2
서울	1	_	1	1	_	1	1	_	1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_
인천	1	1	_	1	1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1	1	_	_	_	_	_	_	_
강원	_	-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_	1	_	_	_	_	_	_	_
전북	_	1	_	_	_	_	_	-	_
전남	_	1	_	_	_	_	_	1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_	1	_	_	_	_	_	-	_
제주	15	15	_	17	16	1	17	16	1

#### 5. 바로 전 3년간 루스트플레이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18	1	_	2	_	17
2022년	17		-	_	1	17
2023년	17			1	_	16

## 6. 루스트플레이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는 루스트플레이스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충/이르	상호/이름 영업표지 <mark>정보공개서</mark>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TE	영호/이름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메이크어베러 (Make a better)	루스트 플레이스	20161044	서양식	17/1	17/2	16/2
가맹본부	㈜메이크어베러 (Make a better)	에이바우트 커피	20170520	커피	53/3	50/3	51/3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루스트플레이스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년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인취ː선권, 구기제 미포								
		2	2023년 가	맹점사업자의	이 연간 평균	· 매출액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평균 (하한)	비고
	1011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6	578,164	6,556	782,368	9,419	257,138	4,220	15곳 산정
서울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부산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구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인천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광주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전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울산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세종	_	해당없음		THE DESCRIPTION OF THE PERSON	_	_	_	5곳 미만
경기	_	해당없음	-4			_	_	5곳 미만
강원	_	해당없음	$\bigcap C$	TĐI	AC	TE	_	5곳 미만
충북	_	해당없음		1 1 1	_///	<b>_</b> L	_	5곳 미만
충남	_	해당없음				00   E	_	5곳 미만
전북	_	해당없음 <sup>RE</sup>	A FAIR TRA	ADE M <u>E</u> DIAT	ION <u>A</u> GEN		_	5곳 미만
전남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북	_	해당없음		_	_	_	_	5곳 미만
경남	_	해당없음		_	_	_	_	5곳 미만
제주	16	578,164	6,556	782,368	9,419	257,138	4,220	15곳 산정

-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포스데이터에 따른 매출액 입니다.]
- ※ [매출액 파악이 안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6개가 아닌 실제 15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에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루스트플레이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루스트플레이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6	2,164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루스트플레이스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직전년도에 에이바우트커피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광고	인터넷광고	연중	_	_			
판촉	_	연중	_	_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신제주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6	064-745-1637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신한은행 계좌가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멀티채널부)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있는 사업자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인터넷뱅킹(www.shinhan.com) 접속 $\rightarrow$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rightarrow$ ③ (기업뱅킹)클릭 $\rightarrow$ ④ 기업지원서비스(가맹금 예치제)클릭 $\rightarrow$ ⑤ (가맹점사업자 서비스페이지 바로 가기)클릭 $\rightarrow$ ⑥ 가맹본부명 및 사업자번호 기입 $\rightarrow$ ⑥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기입 후 예치가맹금 이체
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신한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E 71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개인인감 증명서 ⑤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신한은행에서는 가맹금예치에 관한 업무를 매장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신한은행 계좌가 있으신 사업자는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 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연락처	마케팅부 1670-7000
피보험인(보험계약자)	㈜메이크어베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또는 가맹점 영업개시일 중 빠른 시점
보험금액	예치가맹금에 해당되는 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가맹본부 경유→보험회사 접수→보험회사 조사→지급여부 결정→보험금 지급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 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황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루스트플레이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소요되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0				
가입비	55,000	계약체결일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영업개시 후	

A Landon autom 4.21 A.I L. M. 4.24 4.21 min I

#### 2) 보증금액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구분	금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보증금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30,000천원 (VAT없음)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합계	85,000
가입비	55,000 (부가세 포함)
보증금	30,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sup>-</sup>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437,800	5,472			
인테리어	(협력업체)	220,000	2,750	계약체결시 40% 목공사 완료시점 40% 공사완료시 20%	공사 전 계약취소	264 m² (80평)
간판	(협력업체)	22,000	275	계약체결시 50% 공사완료시 50%	공사 전 계약취소	264 m² (80평)
설비 및 집기	(협력업체)	165,000	2,062	설치, 입고 3일 전	설치, 입고 전 계약취소	264 m² (80평)
초도상품비	가맹본부	30,800	385	물품 공급 3일 이전	물품 미공급시	264 m² (80평)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는 전기증설, 철거공사, 화장실, 소방시설, 가스공사 등은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비용이 부담됩니다.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본부의 철저한 관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의 기획관리비 대가로 1,100만원 (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후 3일 이내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시 확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루스트플레이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원 가맹점 결제 액의 3.3% 직가 맹점( 원 당사 결제 위탁 역의 경영 시)	익월1일	미반환	소멸성비용	*매출 구간별 측정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분담금		광고시행 전	시행 후 광고비로 소요	-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개별청구	판촉시행 전	판촉 후 판촉비로 소요	_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금액		교육시행 전	시행 후 교육비로 소요	보수교육 필요시 지급
포스사용료	협력업체	포스사 요율에 따름	포스사와 개별계약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5쪽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별첨1_1. 거래상대방 참고	협의		부득이한 경우 교체비용:	P 변경될 수 은 협의하여 A	있으며,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로열티, 상품대금, 손해배상금 등 의 지급기한을

|--|

\*매출 구간별 로열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매출액	매출액(VAT포함)		가맹점 형태 (3.3%의 경우)		직가맹점 형태 (5.5%의 경우)	
From	То	로열티	로열티 (VAT포함)	로열티	로열티 (VAT포함)	
_	39,999,999	900,000	990,000	1,500,000	1,650,000	
40,000,000	59,999,999	1,500,000	1,650,000	2,500,000	2,750,000	
60,000,000	79,999,999	2,100,000	2,310,000	3,500,000	3,850,000	
80,000,000	99,999,999	2,700,000	2,970,000	4,500,000	4,950,000	
100,000,000	119,999,999	3,300,000	3,630,000	5,500,000	6,050,000	
120,000,000	139,999,999	3,900,000	4,290,000	6,500,000	7,150,000	
140,000,000	999,999,999	4,500,000	4,950,000	7,500,000	8,250,000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3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 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00%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 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 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로열티, 광고비,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품목을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 중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필요 시에 부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독항목	내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수량 파악	필요시	문의 : 가맹본부
회계처리	회계장부로 실제 매출 파악	필요시	064-747-2555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기간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나면 당사는 귀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재가맹비(10년 후 신규 가맹계약서상 가맹비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LACE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루스트플레이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Tunna Tunil & Tunil

귀하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대한 잔여 채무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채무상환이 지연되는 때에는 위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체된 금액의 연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 비품, 집기 및 가맹본부의 모든 영업비밀 관련 자료나 매뉴얼 등을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 반환 및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귀하가 철거,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등을 지체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철거, 반환 및 원상회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루스트플레이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수하한 AGENCY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루스트플레이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2)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3] 권장가격 내역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TRADE MEDIATION AGENCY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공급품목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다른 가맹점 사업자	정사 정비품국	(S) 및 선배할 T 방급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3]		유선 공지	2019년 12월 기준
권장가격내역		파인 증시	2019년 12월 기군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ann ann i in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파스타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루스트플레이스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직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루스트플레이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루스트플레이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인터넷주소)	취급품 목	[루스트플레이스] 가맹점과 구분되는 점
온라인	행운식품(납품) 꼴라보제주(판매)	https://smartstore.naver.com/collaboje ju/products/59850245067/NaPm=ct%3 Dkzgo5mps%/Cci%3D16475bdf1bcd3 d118f681ce8830e52b9caaa364b%/Ctr %3Dsls%/7Csn%3D722041%/Chk/k3D 32897fdf8cbbf9182b7427542096146b 90a98fbc	돈까스	온라인 판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니	내 온라인·오프라인 판	매 매출액 비중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가맹점 총 매출액)	(직영점 총 매출액)	사사 손대인들	기다 근다한
2023	91.7%	8.3%	0.0%	0.0%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od E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오기이 저으시프 비즈
선도	(가맹점 전용판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0%	0.0%
------	------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루스트플레이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①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 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4조 제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4조 제1항
○ <b>루스트플레이스</b>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 지 않은 경우	제34조 제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4조 제1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그절차 STPLACE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계 약 해 지 사 유	관련 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제2항 및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감독 및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제18조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0조
○ 가맹점사업자가 취급상품, 판매가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1조
○ 당사의 품질 관리 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22조 3항 및 4항
○ 가맹점사업자가 노후 시설의 교체 ·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제25조 제3항
○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물품 등의 대금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27조
○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이 복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9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1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제32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자연투자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 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5	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수정계약서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O'Ò'/| FII A'Ò TH**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rightarrow$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rightarrow$ 승인 여부 통지 $\rightarrow$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rightarrow$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_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 신청 →당사 검토(상속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승인시 경영	교육수료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루스트플레이스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 상대의 파스타 전문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가맹본부 064-747-2555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루스트플레이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23:00 (12시간)	연중무휴 (설, 추석 당일 17:00오픈)	문의 : 가맹본부 064-747-255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제한없음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Q.S.C 점검	담당자 매장 방문 → Q.S.C 체크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가맹사업부	
외부사입 점검	담당자 매장 방문 → 외부사입 여부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가맹사업부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루스트플레이스]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 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	비율	분담 절차	비고
T E	9T 94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급 결사	n  12:
광고 전체 행사		가맹사업법 제1항에 때 정서 체결 차 시 행사 율 안내	제12조의6 바른 사전약 또는 동의절 별로 분담비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 가맹점의 행사 참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1	
판촉 행사	할인행사	가맹사업법 제1항에 때	제12조의6 다른 사전약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증정행사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팜플렛 등 제작	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 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 율 안내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당사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개별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독자적인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당사와 협의 및 승인을 거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사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없이 가맹본부에게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3)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45일 내외	[13p~14p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 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2~29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8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 안내 또는 프랜차이즈보 증보험증권 제공 -가맹금 예치 또는 수령	GEND <sup>¥</sup> 27(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5~23(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2(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실시	D-22~4(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9~2(7일)	
점포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예치가맹금 수령 또는 프랜차이즈보증 보험증권 소멸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및 개별사정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 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 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수령한 날로부터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의 자문	가맹거래사or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3	가맹계약 체결	수령 후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ra*j*iena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① 간판교체 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②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②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ㄱ. 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ㄴ. 2차: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ㄷ. 3차: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필요 시 진행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②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본부 부담
기맹점시업자 요청 시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①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②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③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점사업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싱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해당내용 없음



# V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루스트플레이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 회사소개 - 음식 가공 - 입금 방법 등	이론, 실습교육	계약체결 후 개점전	필수교육
- 신메뉴 출시 보수교육 - 종업원 관리 실무 -기타 필요한 교육 등		이론, 실습교육	별도통지	필요시 실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루스트플레이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	없	최초 개점 전 이수	
보수 교육	추후공지	협의금액	필요시 실시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2023년 말 기준 다음과 같이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루스트플레이스 강서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98, 4층 (등촌동, 1동 홈플러스 강서점앤본사사옥)
2	제주	루스트플레이스 올레시장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62번길4,2층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4년 3개월	_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2023년 직영점의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미프
411,884	KOI[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끝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64-747-25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_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 [별첨 2] 연도별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2021~2022)



# 연도별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2023)





별첨 3. [메뉴명 및 판매가]

	717	elli el	717		
메뉴명	가격	메뉴명	가격		
런치메뉴	F 000	사이드	0.000		
치킨카레	5,900	단품 감자 튀김	3,900		
<u></u>	5,900	모듬 감자 튀김	7,900		
루짬뽕파스타	6,900	윙&봉 세트	6,900		
까르보나라	7,900	나쵸칩과 소스	6,900		
토마토씨푸드파스타	7,900	너츠&브리치즈 구이	8,900		
제주흑돼지돈까스	7,900	후라이드 박스	9,900		
세트(감자튀김+음료)추가	2,900	주류			
샐러드		청정맥주 (생맥주)	900		
트러플오일 머쉬룸샐러드	9,900	쏘맥 (테라+참이슬)	1,500		
트러플오일 갈릭비프샐러드	12,900	타이거	2,900		
오리엔탈 치킨샐러드	10,900	칭따오	2,900		
제주 청귤 샐러드	10,900	하우스 와인 3종	1,500		
제주 청귤 냉 파스타	11,900	플래티넘 스파클링 와인	32,900		
파스타		톨텐 카버네 소비뇽			
국물 봉골레	9,900	톨텐 메를로			
까르보나라	9,900	톨텐 샤르도네	0.000		
빠네	12,900	G7 카버네 소비뇽	9,900		
루짬뽕 파스타	9,900	G7 메를로			
리코타 토마토 파스타	9,900	G7 샤르도네			
로제 쉬림프 파스타	11,900	안젤로 몬테풀치아노 다부르쪼			
2배 리코타 토마토 파스타	16,900	◈ 안젤로 네로 다볼라	19,900		
2배 까르보나라	16,900	안제로 카타리토 샤르도네			
2배 로제 쉬림프 파스타	17,900	카르멘 그랑 리제르바 카버네소비뇽			
돈까스		카르멘 그랑 리제르바 까르메네르	29,900		
제주 흑돼지 돈까스	9,900	카르멘 그랑 리제르바 시라			
2배 제주 흑돼지 돈까스	15,800	1865 까쇼 리제르바	59,900		
더블 치즈 돈까스	11,900	1865 말벡 리제르바	59,900		
(런치) 더블 치즈 돈까스	9,900	1865 까르메네르 리제르바	59,900		
라이스		1865 시라 리제르바	69,900		
쭈삼덮밥	7,900	베어풋 핑크 모스카토	29,900		
치킨카레	7,900	베린저 화이트 진판델	35,900		
비프라이스	8,900	헨켈 트로켄	59,900		
불고기덮밥	8,900	빌라 엠	45,900		
스테이크		모엣 샹동 브뤼 임페리얼	135,900		
수제 함박 스테이크	11,900	에이드/음료			
스테이크 덮밥	12,900	레몬 에이드			
2배 스테이크 덮밥	18,800	자몽 에이드	0.500		
등갈비 BBQ	16,900	블루 레몬 에이드	3,500		
피자	,	애플 망고 에이드	1		
		= =	1		

메뉴명	가격	메뉴명	가격
고르곤졸라 피자	9,900	청포도 에이드	
허니 단호박 피자	9,900	제주 청귤 에이드	
페퍼로니 피자	9,900	코카콜라	2 000
불고기 피자	9,900	스프라이트	2,000



# 별첨 4. [가맹금예치신청서]

